

공고 제2026-554호

2026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간 지식·기술 교류를 통한 융합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03. 06.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기준
 - 과제 파트너는 전국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하되, 업종 및 규모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우수 융합과제에 대해 산·학 공동 또는 기업간 사업화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60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 과제 추진기간 : 과제협약일 ~ 2026년 11월
 - ※ 지원결정(선정)일 ~ 2026년 11월까지 과제 완료 및 상용화 가능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
 - ※ 상용화란 계약, 판매, 투자 등 실제 유상 판매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상태로 함

2. 세부 사업지원 내용

□ 융합과제 사업화 지원

○ 지원내용

- 융합과제 **사업화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 이내 지원**

(융합과제당 **60백만원 이내/ 자부담금(현금) 30%이상**)

- 세부지원내용 :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제품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 지적재산보호비 등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 선정기업 중도포기 및 집행잔액 발생시 후순위 기업 선정 및 지원

※ 후순위 기업 선정 : 평점 70점 이상인 미선정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기업 후순위 기업을 선정

○ 신청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6. 3. 6.(금) ~ 3. 19.(목) 17:00 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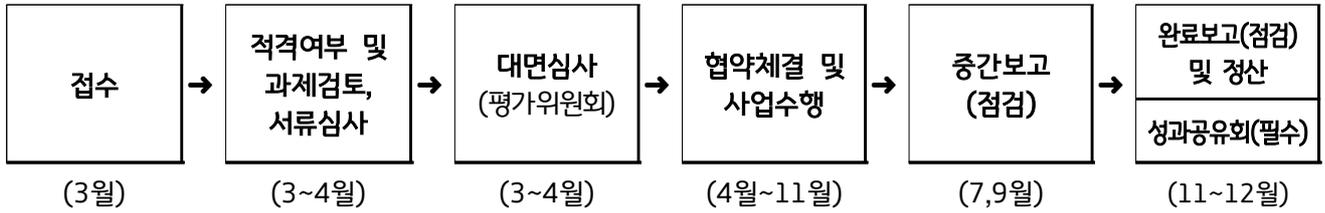
○ 과제정의

- 융합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 간의 지식·기술을 교류하여 창의적 결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신기술·신사업 개발

※ 하단의 표와 [참고1] 융합사례별 중소기업융합 유형 참고

분 류	협업·융합유형	내 용
제품개발 융합	제조업+제조업 (제품+제품)	같이 연결할 수 있거나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기기 및 기능을 결합하여 시간과 공간을 절약 *예) 팩스+프린터+복사기→복합기
	제조업+ICT	제조공정 자체가 혁신적으로 변하는 유형이나 생산되는 제품의 기능과 특성이 융합되는 형태 *예)공장+ICT→ 스마트공장
	제조업(제품)+서비스	제품 사용에서 느끼는 불편함·아쉬움을 채워주거나, 부가기능을 통해 만족을 극대화 *예)스마트폰+금융/전자상거래 → 모바일서비스
	서비스+서비스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연관서비스를 제공, 교차판매, 연관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 *예)카카오+택시 → 카카오택시
기능연계 협업	R&D 중심형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R&D 전문업체가 R&D, 생산, 마케팅업체 등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R&D 기술의 사업화 및 판로 확대 추진
	생산 중심형	생산시설·능력 보유업체가 R&D, 생산, 마케팅업체 등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생산시설의 활용도 제고, 신기술 확보, 사업화 추진
	마케팅 중심형	국내외 판매 네트워크(수주)를 가진 특정업종, 분야의 마케팅 전문업체가 R&D, 생산업체 등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판매
	지식서비스 중심형	서비스업체가 사업주체로서 서비스기업 또는 제조기업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지식기반 비즈니스모델 창출, 고부가가치 사업 등 동반성장

○ 지원절차



○ 평가방법

- 적격여부 및 과제검토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적정여부 확인, 전문가 과제평가*
* 전문가 과제평가 : 융합 성과 및 시장 혁신성(25점), 상용화 계획 및 사업화 가능성(25점)
- 서류심사 항목

구분	계	재무건전성(30점)			기타(20점)		가산점
평가항목	소계	매출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고용 성장률	기술성	-
세부기준	-	(2024년도 매출액/2023년 도 매출액) × 100 -100	(2024년도 영업이익 /전년도 매출액)×100	(2024년도 부채총액/2024 도 자본총계) ×100	(전년도 상시종업원수/전 년도 인원) × 100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 해외규격, 품질인증 등	최대 6점
배점	56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6점

※ 필수(선택) 서류 미제출 시 각 항목별 최저점 부여

- 대면심사 : 사업추진 필요성 및 기술성(25점),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25점), 사업화(상용화) 가능성(35점), 사업 성과 확산 및 협력 수준(15점)
- 법위반기업 확인 및 감점 : 신청기업의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를 감점하여 평가 총점으로 적용
※ [참고2] 법위반 적용법률 및 [참고 3]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참고
※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

○ 협약체결 및 과제진행 절차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진흥원-주관기업 간 협약체결 후 **총 지원금의 70% 이내 (최대 4,200만원) 선지급**
- 과제수행 : (기업별) 사업화과제 수행(~협약 완료일까지)
- 중간점검 :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 등 중간점검 실시(7월, 9월)
- 완료점검 및 성과공유 : 완료보고서 제출 후 완료점검 실시, 성과공유회(11~12월)
- 사업비 정산 : 점검 결과 '**과제 성공**' 시 **지원금 잔액 지급**
* 과제의 상용화 여부에 따른 단계적 사업비(지원금) 환수
** 제품 디자인 및 그 이전 단계로 판단되는 경우 50%, 단순 개발 완료(목업/금형)의 경우 10% 환수
- 성과분석(2026~2028년) : 참여기업 대상 기업 및 과제 결과물 등 성과 추적

3. 신청 제외대상(공통)

□ 제외조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96112	두발미용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96113	피부미용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96119		기타미용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96121		욕탕업	
	56193	치킨 전문점	96122		마사지업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56132	이동 음식업	96912		가정용세탁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6913		세탁물공급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96922	화장, 모지분양 및 관리업		
	56219	기타 주점업	96991	예식장업		
	56191	제과점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게임블링 및 베팅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 다.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창업 3년이내 기업 제외)
- 라.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 마.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최근 3년이내(2023년 ~ 2025년) 동일 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2026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중복참여 제한 사업

- ①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 ②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

※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 상기사항 포함, 제재사항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운영지침에 따름
- ※ 기업선정 이후 지원제외조건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선정 취소 조치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발급처(온라인)
필수서류	사업화과제 신청서 및 붙임서류 ① 사업화과제 신청서 ② 분쟁 책임 동의서 ③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④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⑤ 청렴서약서 ⑥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⑦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⑧ 사업화과제 계획서	사업운영 지침 [서식 제1호] 및 붙임서식
	'23, '24년 확정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주관기업)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4년, 2025년 12월 귀속분, 주관기업)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주관기업/파트너 모두 제출 필수)	정부24(http://www.gov.kr)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선택서류 (해당사)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사본 (주관기업/파트너 모두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공장등록증명(주관기업) ※ 본사가 아닌 공장이 도내 소재할 경우 필수 제출	정부24(http://www.gov.kr)
	기업의 법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 신청서,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주관기업)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서식 제19호], 유예대상 법위반 행위인 경우 [서식 제20호] 작성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해외규격,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 (주관기업)	특허청, 개별 공인기관 ※ 기업명으로 된 서류만 인정 (기업 대표자 명의 권리권 불인정)
	융합·협업 업무협약서 및 협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주관기업)	개별기업 자체 양식
	(가점) 경기도 기업간 과제 신청	서류 미제출(진흥원 확인)
	(가점)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주관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
	(가점) 장애인기업(주관기업)	정부24(http://www.gov.kr)
	(가점) 사회적기업(주관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www.seis.or.kr)
	(가점) 면접수당 지급기업, 경기도 가족친화 일자리 좋은 인증기업,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주관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
(가점)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ESG 진단·평가 우수기업(주관기업)	참여확인서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	
(가점)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주관기업)	서류 미제출(진흥원 확인)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www.egbiz.or.kr)

- 경기기업비서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증빙서류」 해당 파일 업로드
 - ※ 10MB 제한, 알집파일 가능

※ 신청 마감 시점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접수 완료 요망

5. 문 의 처

구 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지원팀
전 화	031-259-6496
이 메 일	mck@gbsa.or.kr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층 스케일업본부 성장지원팀

※ 경기기업비서 전산오류관련 문의 : 031-259-6299

[참고1] 융합사례별 중소기업융합 유형

구 분	융합유형		사 례	설 명
융합대상	제품+제품		Nintendo 3DS	휴대용 닌텐도 게임기와 3D 액정 제품을 결합
	기술+기술		LED Smart TV Cloud Computing	기존 TV기술과 LED기술의 결합 네트워크, 보안과 컴퓨터기술의 조합
	제품+기술		App Store	제품(스마트폰, 태블릿)과 기술/서비스(콘텐츠)의 결합
	기술+산업		DNA Chip	전자공학(+화학공학+생명공학) 위주 기술과 의료/보건 산업의 결합
	산업+산업		Smart Grid	전력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연계
	서비스+서비스		온라인-오프라인 연계서비스 의료관광	동일 서비스에 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제공 의료서비스와 관광서비스의 결합
융합 목적 또는 파급효과	기존 가치 제고	기능강화	세탁기	기존세탁기 제품에 건조기, 은나노, 공기방울 기술을 부가하여 본래 세탁기능을 강화
		기술발전	로봇청소기	기존 진공청소기에 핵심로봇 기술이 적용되어, 청소기의 성능 향상과 동시에 센서 등 로봇기술 용도 확장
			초음파기기	기존 초음파 용접기/세척기 기술에서부터, 전자·기계·재료기술을 결합하여 유리, AI, 이종 금속 납땜 등 새로운 용도에 적용
			미디어 스트리밍	네트워크, DAC 및 DSP기술이 결합하여 무선스트리밍의 한계 향상
		시장확장	App Store	기존 휴대폰의 시장을 확장
		기타기존 가치제고	-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융합으로 신규가치 창출
	신규 가치 창출	신기술(제품) 개발 및 창출	터치패드 필름	필름제조업체와 고무과 전도성 소재기업의 협업과정에서 새로운 CNT(Carbon Nano Tube) 소재를 적용
		원천기술 창조	임플란트 소재	임플란트 소재성형과 이를 위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함에 있어 기계-재료 기술의 접목으로 신재료의 결정구조, 상태도, 물성치 등 원천기술을 구축
		기술/제품 와해	iPod 및 iPhone	iPod는 기존의 MP3, iPhone은 기존의 휴대폰 시장을 와해하고 재정립
			전자종이	디스플레이+신소재 기술이 결합하여 기존의 종이를 와해시키는 역할
		-	Nintendo Will	기존의 가정용 게임기 시장 뿐 아니라, 가정용 체력단련 및 교육기기 시장 창출
			연료감응형 대양전지	기존 태양전지 및 염료소재기술이 결합, Building Intergrated Photo Voltaics 산업 형성
-	-	-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융합으로 신규가치 창출	

[참고 2] 법위반 적용법률

법위반 적용법률 - 11개

적용법률		내 용
I 공정	① 공정거래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
	② 하도급법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균형발전
	③ 표시광고법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
II 노동	④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기여
	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III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기여
	⑦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
	⑧ 소음진동관리법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⑨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IV 납세	⑩ 국세기본법	국세,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 과세(課稅),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⑪ 지방세기본법	

[참고 3]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6-8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8.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3.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
가.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 · 유예사업

- 1) (계도 · 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 2) (사업운영비 · 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 · 다수기업 지원사업
-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 4) (자금 · 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 5) (시 · 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 1)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2)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 11개 법률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붙임 1)에 대하여 조건부 적용 유예
다.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 · 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 · 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 · 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4)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
- 단,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 · 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다.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

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
-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
-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도·시군 조회
-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031-8030-2992)

-

(붙임 1)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2	공정거래법	•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3	표시광고법	•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4	근로기준법	• 노동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5	근로기준법	•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
6	근로기준법	•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미발급)
7	근로기준법	•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미작성)
8	근로기준법	•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 (계약서류 미보존)
9	근로기준법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대장, 명세서 미작성)
10	근로기준법	•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미비치)
11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
12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등록갱신 미이행
13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14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15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16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 (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17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18	산업안전보건법	•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19	산업안전보건법	• 휴게시설 미설치
20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21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22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책임자 미지정)
23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미작성)
24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5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
26	산업안전보건법	• 불성실 보고
27	폐기물관리법	•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29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3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33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34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35	소음진동관리법	•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36	소음진동관리법	•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37	소음진동관리법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38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영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39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
40	물환경보전법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41	물환경보전법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42	물환경보전법	•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43	물환경보전법	•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44	물환경보전법	•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
45	물환경보전법	•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46	물환경보전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
47	지방세기본법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